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7
----------	-----

2017. 7. 1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7월 12일

-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도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
-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자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 ·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4조)
 -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 한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

-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안 제4조)
-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안 제5조)
-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포함(안 제11조)
-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 지정 조문화(안 제13조)
 - 사업비 총액, 세입예산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고,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며,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포함시키고,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를 지정하는 것 등임,
 - 금번 개정조례안 중

첫째,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17개 시도 중 금고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 곳은 충북을 포함하여 7개 시도이며, 4년으로 한 곳은 10개 시도임. 또한 금년말 금고 재계약을 앞둔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장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이 가능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

둘째,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은 도금고 계약시의

합의한 협력사업비 출연을 보다 공개함으로서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셋째,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영, 협력사업비의 공개를 통한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37 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6월 2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7
----------	-----

제출연월일 : 2017년 6월 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
-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자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4조)
 -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 한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
-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안 제4조)
-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안 제5조)
-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포함(안 제11조)
-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 지정 조문화(안 제13조)
 - 사업비 총액, 세입예산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명날인함”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을 반
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
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
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충청북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급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 ----- ----- -----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u>기명날인함</u>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 8. (생략) 제4조(금고지정 방법)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	2. ~ 4. (현행과 같음) 5.-----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u>3.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u> <u>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 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u>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u>3년</u>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u>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신 설></u>	제5조(약정기간)----- -----<u>4년</u>----- ----- -----.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 ----- ----- <u>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u> <u>도지사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u>

현행	개정안
<u>제13조</u>(시행규칙) (생략)	<u>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u>제14조</u>(시행규칙) 현행 제13조

관련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
〔 (2015.12.24. 개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①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②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9)	6. 기타사항(9) - 항목 가. 000(5) 나. 000(4)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평가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u>유동성커버리지비율</u>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 경영지표평가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 · 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①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②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①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 12. 30)은 폐지함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업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